

1. 현업직

현업직관리규정 [고용의 자격제한]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0.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파면·해임 또는 직권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가. 직무태만/ 나. 소행불량/ 다. 상사의 명령불복종/ 라.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